

선 람	기 관 의 장

포항시보

제1096호 2016. 5. 31(화)

◀ 훈 령 ▶

-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제371호) 2

◀ 입법예고 ▶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제2016-34호) 19

◀ 고 시 ▶

- 도로명주소 고시(제2016-50호) 43
○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제2016-52호) 47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고시(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제2016-2호) 49

◀ 공 고 ▶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제2016-757호) 50

회 람								
--------	--	--	--	--	--	--	--	--

훈 령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이 강 덕

2016년 5월 31일

포항시 훈령 제317호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포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를 “행정감사규정」 및 「포항시 자체감사 규칙」상의 징계·경고·훈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을 “제5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사관실”을 “감사담당관실”로 한다.

제8조 중 “피 감사 기관장”을 “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감사자”를 “감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피 감사자”를 “감사대상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피 감사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처분지시(징계 의결요구)”를 “처분지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본문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양정결정시”를 “양정결정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처분의 효력)”을 “(경고 등 처분의 효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처분사유)”를 “(경고 등 처분사유)”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처분권자)”를 “(경고 등 처분권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처분방법)”을 “(경고 등 처분방법)”으로 한다.

제19조 중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 1 및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면책심사신청 안내

포항시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1호 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가쳤을 것		
5. 기타		

※ 필요 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포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명 성 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2호 서식]

면책심사조서

감사기관명		감사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사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부서책임자검토의견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합의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3호 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심사결과						

20 . . .

포항시 면책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부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4호 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5호 서식]

경 고(훈계·주의)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인)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별지 제6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에 대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면책은 시 소속기관·산하단체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등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처리 한다.

1. 공익성 : 업무처리의 목적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개인적인 이익 취득이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
2. 타당성 : 법령상의 의무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3. 투명성 :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그 과정 등을 관련 문서에 충실히 기재하여 합당한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였을 것 (단,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업무처리로는 국가안위 및 공공 이익 증진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명백하게 곤란할 정도의 시급성·불가피성

-----.

제4조(면책대상자) ----- 따른 -----

-----.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등이 있는 경우에는 투명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 가능)

<신 설>

<신 설>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
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
외한다.

1. ~ 5. (생 략)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생 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
로 하고,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중
심의안건 관련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및 감사담당관실 담당으로 한다.

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
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
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
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

-----.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팀장-----.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관실 업무소관 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감사 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표 1에 의하여 안내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피감사자에 대하여 면책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피 감사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피 감사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

③ -----
----- 감사담당관실 -----
-----.

제8조(면책제도 안내) -----

감사대상기관의 장-----
--- 따라 -----.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
-----감사대상자-----

-----.

② 감사대상자-----

-----.

③ 감사대상기관-----

-----.

④ -----
----- 따라 -----
----- 처분지시-----
-----.

<단서 삭제>

제10조(면책심사 처리) -----
----- 제9조에 따라 -----

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의 개최 및 의결) ① (생략)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 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 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

--- 따라 -----

--. <단서 삭제>

제11조(심의회 의 개최 및 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
----- 양정결정 시 -----

-----.

② -----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

제13조(유의사항) ----- 따른 ---

-----.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

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시 소속 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생 략)

제15조(처분의 효력) (생 략)

제16조(처분사유) (생 략)

제17조(처분권자) (생 략)

제18조(처분방법) (생 략)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현행과 같음)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 (현행과 같음)

제17조(경고 등 처분권자)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고 등 처분방법) (현행과 같음)

제19조(기록유지) -----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 훈령(제67조) 및 경상북도 훈령(제1486호)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자체감사에서 소속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기반을 강화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대상 확대(안 제3조, 제10조)

-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징계'에서 '징계·경고·훈계'까지 확대

나.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완화(안 제9조)

- 적극행정 신청기한을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까지 확대

다.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명확화(안 제5조)

-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5.18.) 사항을 반영

라. 그 밖에 미비사항 보완(안 제2조 등)

-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 변경(과 감사 → 감사대상) 등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입 법 예 고

포항시 공고 제2016-34호

공 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5. 25.

포 항 시 장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및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관련내용 및 서식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제명 변경(안 제1조)
- 나.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 다.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4. 규칙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6.5.25. ~ 2016.6.14.(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여성가족과(37683)

☎ 054)270-3014, FAX 054)270-3020, E-mail haedol0320@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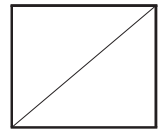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16. . . (제 회)

의
결
사
항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6. . .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 이유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명 및 용어 등을 일치시키고, 관련내용 및 서식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맞게 제명 변경(안 제1조)
- 나. “포항시 여성발전기금”을 “포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안 제2조)
- 다.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으로 변경(안 제6조)
-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4. 규칙안 : 붙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에서 규정한”을 “제37조에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여성발전”을 “양성평등 실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포항시여성발전위원회”를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로 “결정 한다”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여성관련”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사업개시 1월전”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럼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제7조제2항 중 “기금교부 신청서”를 “기금 교부신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7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을 “조례 및 규칙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정하지 아니한”을 “정한 것 외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을 “제14조제3항”으로, “그 밖에 사업수행”을 “사업수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0조”를 “제44조”로, “후보자”를 “수상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수상후보자”를 “사람은 수상대상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제17조제2항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를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 및 제2-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금 지원 신청서

기관·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팩 스		
	E-mail				
지원사업분야 (해당난에 ■ 표시)	【일반공모사업】		☐		
	【기획공모사업】		☐		
			☐		
			☐		
사 업 명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기금보조액	자체부담액	후원금	기 타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월 일				
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명 : 포 항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2. 법인·단체의 현황 3. 최근 1년간 사업(활동)실적 4.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별지 제2-1호 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포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양성평등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포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기관·단체명

양성평등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2-2호 서식】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

□ 기금지원사업자

단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기금지원사업

(단위 : 원)

기 금 지 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양성평등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기금지원사업 수행현황

(단위 : 원)

연도별	기금 교부 자치단체	기금지원사업명	지원액	정 산 반환액	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기금지원사업자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기금집행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양성평등기금				
자 체 부 담 금				
기 타				

- 붙임 : 1. 지원 사업 추진실적 1부
2. 기금 집행내역 1 부
3. 영수증 사본, 세금계산서 각 1부
4. 행사유인물·사진 등 각 1부
5. 기타 각종 증빙서류 1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 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기관·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포 항 시 장 귀하

3. 지원 사업 추진실적

사 업 개 요	
추진 실적	
효 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4. 지원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집행내역	집행액			
	계	양성평등기금	자체부담금	기타
계				

5.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보고서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일 시 :
- 장 소 :
- 참여인원 : 명(호응도 : 상, 중, 하)
- 사 업 비 : 원(보조금 자부담 기타)
- 단 체 명 :

☐ 총 평

- 잘된 점
-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사업효과

-
-

☐ 종합의견

-

□ 사업비 집행상황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보 조 금	집 행 내 역			잔 액	검토의견
		비 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자 부 담	집 행 내 역			잔 액	검토의견
		비 목	산출근거	집행액		
계						
현금집행						
계좌입금						
카드집행						

【별지 제9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등록기준지												
직 업						소 속						
직 위						등 급(직급, 계급)			근무(공적)기간			
										년	월	
공적요지						공 적 분 야 코 드						
추천훈격	포 항 시 장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조례 제21조 제7호에서 규정한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을 말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7호에 따른 양성평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장----- -----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35조에서 규정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원대상) --- 제37조에 따른-----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3. 양성평등 실현----- -----
제4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 ----- -----.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포항시여성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제6조(기금의 지원결정) ① ----- 제4조에 따른 ----- ----- 포항시 양성평등위원회----- -----

를 결정 한다.

1. ~ 4. (생 략)

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제7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신청서를 사업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당해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6조의

-결정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

6. 시장-----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2-1호 서식)

2. 기금지원사업자 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

② ----- 기금 교부신청서-----

-----.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① -----

----- 따라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기금의 정산보고) ① 제6조에

규정에 의한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조례 제3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

2. ~ 4. (생략)

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지원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 받은 날부터 3년간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따른 -----

----- 1개월 -----

----- 따른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

-----.

1. ---- 제37조-----

2. ~ 4. (현행과 같음)

5. 조례 및 규칙에 따른-----

② 제1항에 따른 -----

-----.

제12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11

1조에 따른 -----

-----.

제13조(장부의 비치 등) -----

-----.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정한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조례 제43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교육훈련 경비와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한다.

② (생략)

제17조(추천) ① 조례 제50조의 포항시 여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 경력이 있는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생략)

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당해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것 외에 -----
-----.

제16조(보조금의 지원) ① ---- 제14조제3항-----

사업수행-----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추천) ① --- 제44조-----

-----수상대상자-----

-----.

1. ~ 4. (현행과 같음)

② -----

사람은 수상대상자-----.

1. -----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3. -----

----- 사람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해당 수상대상자로 추천받은 사람이-----

-----.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6 - 50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5월 23일

포 항 시 장

○ 도로명주소 :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안로 4366외 127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92~3495)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법정주소로 인정되므로 각종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NO	주요주요	토지면적(㎡)	토지소유자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187-1	436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366	20090710	동해만에 인접한도로	
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273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로를 건설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적신탁대상 이용한다로명	
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63	35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50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로를 건설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적신탁대상 이용한다로명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400-2	3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71	20091201	해안선을 따라 일출로를 건설 할 수 있는 도로로 지적신탁대상 이용한다로명	
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신안리 69	979-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신안리 979-40	20091201	온저산을 향하는 도로로 지명을 이용하여 도로명	
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1리 685-1	4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1리53번길 46	20091201	제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1리 824	170-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1리 170-32	20091201	제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653-7	14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145	20091201	제내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동리 584-1, 584	143-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동리 45번길 143-23	20091201	상동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동리 417-13	124-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동리 124-11	20091201	동해면의 일출로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경오정 제오나"의 일출로를 이용하여 도로명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547	28-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18번길 28-2	20091201	상동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호리 557-1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호리 67번길 37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2-16	1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73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7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99-20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번길 16	20091201	유간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25-1	4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46번길 42-8	20091201	지명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897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3	20091201	연출 남쪽을 향하는 도로로 통곡역 방향을 이용하여 도로명	
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923-9	17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84번길 179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8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893-105	7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02번길 71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893-104	7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02번길 73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943-11	2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08번길 23-1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12-6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40번길 11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12-25	11-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40번길 11-10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99-5	1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40번길 15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12-4	95-11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60번길 95-117	20091201	남상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6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31-7	1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1	20091201	통곡구역(영일읍)을 이용하여 도로명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414-6	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79번길 7	20091201	영일읍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88	10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3	20091201	통곡 구역(영일읍)을 이용하여 도로명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77-4	10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3-1	20091201	통곡 구역(영일읍)을 이용하여 도로명	
2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893-19	5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5	20091201	통곡 구역(영일읍)을 이용하여 도로명	
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30-2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616번길 3-1	20091201	경동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6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189-1	16-1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21번길 16-19	20091201	영일읍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15-13	2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59번길 22	20091201	해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12-1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6	20090710	동해만에 인접한도로	
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94-70	16-1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253번길 16-10	20091201	동해만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5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5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9	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3936번길 124	20091201	동해만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3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068	91-12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091번길 91-124	20091201	산서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7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69-6	2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8	20091201	통곡구역(영일읍)을 이용하여 도로명	
38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27	26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79번길 26	20091201	해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9-22	1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78번길 13-1	20091201	경동주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118-10	69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69	20091201	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234-27	155-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155-13	20091201	포항시의 상상을 위해 해방에 14년의 포항주은 50주년을 기념으로 해북로 명칭으로 도로명	
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569-2	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개천리 4	20091201	해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3	경상북도 도형시 남구 효성로390번길 10-5	20091201	효성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4	경상북도 도형시 남구 효성로 360-16	20091201	"장곡 회랑의 도시 구조를 포함" 미래의 다도시 포항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45	경상북도 도형시 남구 효성로 360-18	20091201	"장곡 회랑의 도시 구조를 포함" 미래의 다도시 포항발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46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기남리149번길 36	20091201	기남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7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세마로로 1612	20090730	지역적 특성 반영 (세마를 포함)
48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세마읍행정지침75번길 100-85	20091201	세마읍행정지침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9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학마길215번길 2-89	20091201	학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5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0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학마리226번길 6-1	20091201	학마리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1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구관길 216-5	20091201	행정구역 구관리와 관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지침을 따서 구관길로 명명
52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오덕리 53-17	20091201	행정구역명(오덕리)를 이용하여 오덕길로 명명
53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오덕길54번길 31-11	20091201	오덕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4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기개면 학원로 165	20091201	도형학원을 건립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55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116번길 40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6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111번길 8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7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25번길 29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8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39번길 5-2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9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39번길 5-4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0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39번길 5-6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1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학원로39번길 5-8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2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상촌로 114	20091201	학원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3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상촌로 133	20091201	포항의 3대 초수가 있었던 지역의 상촌초와 용흥초를 연결하는 도로로 학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64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상촌로342번길 34-46	20091201	포항의 3대 초수가 있었던 지역의 상촌초와 용흥초를 연결하는 도로로 학지명과 행정구역 명칭을 이용한 도로명
65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새천년로 1033-13	20091201	상촌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4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6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용리면 북경로 433	20091201	관동해 물주변도시가 도형이 동해로 확장하게 될아기는 새천년의 희망을 담은 도로명
67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용리면 학마로 2845-1	20091201	북부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지는 지방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8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용리면 학마로2672번길 2	20091201	내리산 보림사 근접지역임을 향하는 도로로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69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1207-19	20090730	해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72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0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 127-19	20090730	지역적,지리적 특성 반영(비학산)
71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신광면 비학로519번길 137-33	20091201	비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2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신광면 신흥로221번길 26-39	20091201	신흥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2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3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신광면 용곡길 90	20091201	행정구역명(용곡리)를 이용하여 용곡길로 명명
74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남로 63	20091201	행정구역 명칭(영덕)과 영덕(남)을 이용하여 영덕남로로 명명
75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남로81번길 15-1	20091201	영덕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6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30번길 42-8	20091201	영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7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30번길 6-20	20091201	영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8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44번길 45	20091201	영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9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44번길 46	20091201	영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0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62번길 52	20091201	영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1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로 70-17	20091201	행정구역명(영덕)을 이용하여 영덕도로 명명
82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영덕남로 97	20091201	영덕남로를 따라 연결된 도로의 지역적특성을 이용한 도로명
83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이흥로 46	20091201	행정구역 명칭(이흥)을 이용하여 이흥도로 명명
84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장광로 245	20091201	행정구역명(장광)을 이용하여 장광도로 명명
85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장광로145번길 30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5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6	경상북도 도형시 북구 장광로174번길 6-7	20091201	장광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4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포항시 고시 제2016 - 52호

포항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리 도시계획도로 외 1개소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 5. 26.

포항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 ·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4	15	보조 간선 도로	3,850	대로1-1	대로2-40	일반 도로	-	건고 제194호 (1976.12.7)	
변경	중로	2	74	15	보조 간선 도로	3,833	대로1-1	대로2-40	일반 도로	-	건고 제194호 (1976.12.7)	일부구간 선형변경 (639m)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242	소로3-82	소로2-27	일반 도로	-	경북고 제64호 (1979.3.20)	
변경	소로	2	44	8	국지 도로	240	소로3-82	소로2-27	일반 도로	-	경북고 제64호 (1979.3.20)	일부구간 선형변경 (120m)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류74호선	중로2류74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639m) L=3,850→3,833m (감 17m)	포항-영덕간 고속도로(홍안2교) 개설 계획에 맞추어 급커브 곡선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소로2류44호선	소로2류44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120m) L=242→240m (감 2m)	기존 주택지역내 불합리한 일부구간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 도면 실음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도시계획과 054-270-3466)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고시 제2016 - 2호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품목별 경매시간 및 경매장소 고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69조 및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의 품목별 경매시간과 경매장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함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3일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품 목	경매시간		경매장소
	하절기 (6월 ~ 9월)	동절기 (10월 ~ 익년 5월)	
청과부류	07:00 ~ 경매종료시까지	08: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그 밖의 품목(단순가공 농산품 등)	07:00 ~ 경매종료시까지	08:00 ~ 경매종료시까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동 및 트럭단위판매 경매장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16 - 757호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공람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1992-550호('93. 1. 15)로 사업시행인가 된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하시기 바람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5. 25.

포 항 시 장

1. 사 업 명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 신정, 약전리 일원
3. 면 적 : 628,939m²
4. 변경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비	20,340,000,000원	33,969,122,000원	증)13,629,122,000원

5. 변경사유 :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 마무리 지연 등 물가 상승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사치환으로 일부 충당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6.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054-284-3650)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8. 의견 제출기간 : 공람기간 내